



【검토보고서】

2017.10.20(금)
제 285 회 임시회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최상열】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양주시장(도시계획과)
- 나. 제출일 : 2017년 10월 10일

2. 제안이유

양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4.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고기간 : 2017. 8. 2. ~ 8. 22.(20일간)
- 다. 협의기간 : 2017. 7. 19. ~ 7. 27.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내 경찰서 및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2017.5.26.) 등 지속적 건의된 사항임.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이란?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 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활용사례)

| 도 시 | 시 기 | 활용사례 | 효 과 |
|--------|-----------|-------------------------------|------------------|
| 영국 런던 | 1980년대 후반 | 가로조명 조도 상향 | 보행자 도로사용률 50% 증가 |
| 일본 도쿄 | 1970년대 후반 | 보행자도로 조명설치 조명 색 변경 | 범죄율 20%감소 |
| 부산 금정구 | 2014년 | 안삼지도, 치안올레길 등 | 5대범죄 65.9% 감소 |
| 서울 마포구 | 2012년 | 지킴이집, 초소설치, 담벼락 보수, 소금길 조성 | 범죄율 78.6% 감소 |

(양주시 CPTED 관련 사업)

- 사업명 :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16~' 17)
- 사업내용 : 교육공간 특성에 맞는 색채디자인 개발 및 그래픽 도안 도출
- 사업비(2017년) : 디자인개발비 35백만원(양주시), 환경개선 시설비 250백만원(교육청)
- 사업대상 : 가남초 등 3개소 (2016년), 은봉초 등 5개소 (2017년)



○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목적

-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 양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구성 : 전문 12개조, 부칙

| 구 분 | 내 용 | 세부내용 |
|------|-----------------------|------------------------------|
| 제1조 | 목적 | 조례제정 목적 |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용어의 정의 |
| 제3조 | 기본원칙 | 시야 개방, 조명 조경 등의 원칙 |
| 제4조 | 시장의 책무 |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시책 추진, 참여권장 |
| 제5조 | 적용범위 | 양주시 및 공공기관 시행 건축물, 도시공간 사업 등 |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
| 제7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 기준 수립 및 각종 사업에 적용 권장 |
| 제8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 안전시범마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등 |
| 제9조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 |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 |
| 제11조 | 홍보 및 포상 | 우수사례 홍보, 양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가능 |
| 제12조 | 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 부 칙 |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다. 주요 내용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미리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2)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안 제3조)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4조 ~ 제5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안 제6조~제7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변경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양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추진사업(안 제8조)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기타사항 (안 제10조~제12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포상) ①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검토 의견

-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부각됨으로써 범죄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경기도(2013. 11월 제정)를 비롯하여 37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11개소 (조례제정 9, 입법예고 2)

-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운영 관련 국회 차원의 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6. 7. 27.)

-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범죄예방디자인시책 수립·운영을,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진단 및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관리를 각각 담당하되, 서로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 또는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를 두어 지자체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채널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정보자료 관리, 범죄위험지수 공표, 범죄예보 및 경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거나,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CCTV 등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 등 일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제정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 조례 제정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 차원을 벗어나 주민의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